

新·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(案)
<p>제2조(면제대상)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</p> <p>다만, 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</p> <p>2-5호 (생략)</p> <p>(신 설)</p>	<p>제2조(면제대상)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</p> <p>다만, 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현행과 같음.</p> <p>2-5호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</p>

서울特別市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(案)
 審査報告書

1992년 9월 17일
 市民保健委員會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2년 8월11일
 麻浦區廳長
- 나. 회부일자 : 1992년 9월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1회의회(임사회) 제1차위원회

('92.9.17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보건행정과장 유태봉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마련

나. 주요골자

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

1)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

- 2)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
 - 3)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
 - 4)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
 - 5) 무의탁자의 진료
 - 6)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
 - 7)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
3.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건재)
- 1) 동조례(안)은 제1조중 보건소법 “ 제6조 ”를 “ 제8조 ”로 하고, 제3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은 보건소법(법률 제4355호, 1991년3월8일)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(보건사회부령 제883호, 1991.10.10)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,
 - 2) 제3조제2항의 신설은 전염병 예방법 제47조, 생활보호법 제36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(안)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.
- 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 - 5. 토론요지 : 없음
 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 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 - 8. 기타

서울特別市麻浦區保健所關價條例中改正條例(案)

제출년월일 : 1992년8월11일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- 1. 제안이유
○보건소법(법률 제4355호, 1991.3.8)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(보건사회부령 제883호, 1991.10.10)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.
○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마련

- 2. 주요골자
○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
1.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
2.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
3.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
4.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
5. 무의탁자의 진료
6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
7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(안 제3조 제2항)
3. 관련법규

- 보건소법 제8조
· 제8조(수수료등)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
· 제3조(보호대상자의 구분)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는 1종보호대상자,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.

- 전염병 예방법 제47조
· 제47조(서울특별시, 직할시, 시, 군이 부담하는 경비) 다음의 경비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 또는 시, 군이 부담한다.

- 1.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
- 2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원, 격리병사,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
- 3. 제2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소 또는 진료비에 관한 경비
- 4.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의원에 관한 경비
- 5. 구 또는 시, 군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,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
- 6. 예방구료에 중사환자에 대한 수당금, 치료비 또는 조제료

- 7. 서울특별시, 직할시 또는 시, 군에서 실시하는 쥐, 벌레의 구제비
- 8.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
- 9.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
- 10. 기타 시, 군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

○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

· 제36조(보호비용의 부담구분)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

- 1. 국가 또는 도가 직접 행하는 보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도가 부담한다.
- 2.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도가 부담한다.
- 3. 서울특별시, 직할시, 시 또는 군이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서울특별시, 직할시, 시 또는 군이 부담한다.
- 4. 서울특별시, 직할시, 시 또는 군이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의 부담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○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제1호

· 제22조(비용부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- 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

서울特別市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1條 中 “第6條” 를 “第8條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의료

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,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,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
- 2.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
- 3.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
- 4.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
- 5. 무의탁자의 진료
- 6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
- 7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新·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(案)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수수료의 면제)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(1종보호대상자) 및 녹색(2종보호대상자), 청색(의료부조대상자)의료보호수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,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,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,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
	<p>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.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.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.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. 무의탁자의 진료 6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